

2024년도 위암 검진 결과내역

발급번호: WGK01-17377-02854-14972-75827

성명	김태형	주민번호	600809-1*****
----	-----	------	---------------

검사항목		결과 [병형(부위)]	판정
위장조영 2024.05.30	판독소견	1 이상소견없음()	정상
		2	
		3	
위내시경	관찰소견	1	정상
		2	
		3	
조직진단			

권고사항

위장조영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으면 2년 후 정기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일	
판정일	2024년 06월 05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113887
	판정의사명 심원용
검진기관	검진기관번호 11100982
	검진기관명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 위암은 4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이상 남녀 모두 2년 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장조영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 31.일까지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위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암검진 결과가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위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위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위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관련 요건(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 등)을 갖춘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2025년 0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024년도 대장암 검진 결과내역

발급번호:

성명	김태형	주민번호	600809-1*****
----	-----	------	---------------

검사항목		결과		판정
분변잠혈검사	검사방법	정량검사		잠혈반응 없음
	결과	음성		
	검사수치	11 ng/ml (기준치: 100 ng/ml)		
대장내시경 검사	관찰소견	1		잠혈반응 없음
		2		
		3		
		기타		
조직진단				

권고사항

분변잠혈반응 검사 결과 음성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않음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경우에 따라 대장에 병변 염증, 용종, 암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의심되는 증상 체중감소, 대변 굽기의 변화, 혈변 등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진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일	2024년 05월 30일
판정일	2024년 06월 05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113887
검진기관	판정의사명 심원용 검진기관번호 11100982 검진기관명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 대장암은 5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이상 남녀 모두 매년 분변잠혈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 31일 까지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자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수검자는 대장암검진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분변잠혈검사만으로 모든 대장 질환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분변잠혈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대변 굽기의 변화, 혈변 등)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 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관련 요건(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 등)을 갖춘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2025년 0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